

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와 감독 기준 제정

- 국토해양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감독 기준」 제정, 보다 체계적 관리 도모 -

조 재 환 | 건설공제조합 리스크관리팀장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도에 설립되어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 11월 현재 약 100조원 규모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저렴한 보증 비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양질의 신용을 공여”하는 「건설법」상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의 증가는 조합이 부담하는 잠재 보증 대급 위험 또한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며, 조합이 상응하는 충분한 재무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나 2010년

이후 건설업 PF에 따른 건설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한층 중요시하고 있다.

조합에서의 ‘리스크 관리’란 “보증인수로 인한 위험량을 측정하고 위험량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토록 하며, 이 위험량이 신용평가 모형, 보증 한도, 보증 수수료에 적절히 반영되고 통제되어 계속 기업을 영위토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 기준에 따라 강제되고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이러한 표준화된 감독 규정 없이 국토부의 업무 감시와 자기자본 규제(자본금의 30배)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조합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어 국토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감독 규정과 유사한 가칭 「건설 관련 공제조합감독 기준」을 제정하여 건설공제조합, 설비조합, 전문조합에 공통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감독 규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공제조합 실무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용역팀을 구성하여 2010년에 감독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감독 기준 근거 법률(「건설법」 65조의 2 공제조합 등 건설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 유지)이 2011년 5월 개정·공포되었으

연도별 보증 잔액표

(단위 : 조원)

구분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잔액	26.3	46.2	52.2	67.3	81.3	88.1	95.7	100.3

경영 정보

며, 감독 기준은 2012년 5월까지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 기준의 주요 내용

감독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보험사의 핵심적인 규제 장치로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고자 하였다. 즉, 공제조합의 사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재무 건전성 지표는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표시되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보험의 지급 여력 비율과 산출 방식이

유사하다.

둘째, 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하고 위험량을 평가하며,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등의 리스크 절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2009년도에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하고 이를 보증 한도, 수수료 등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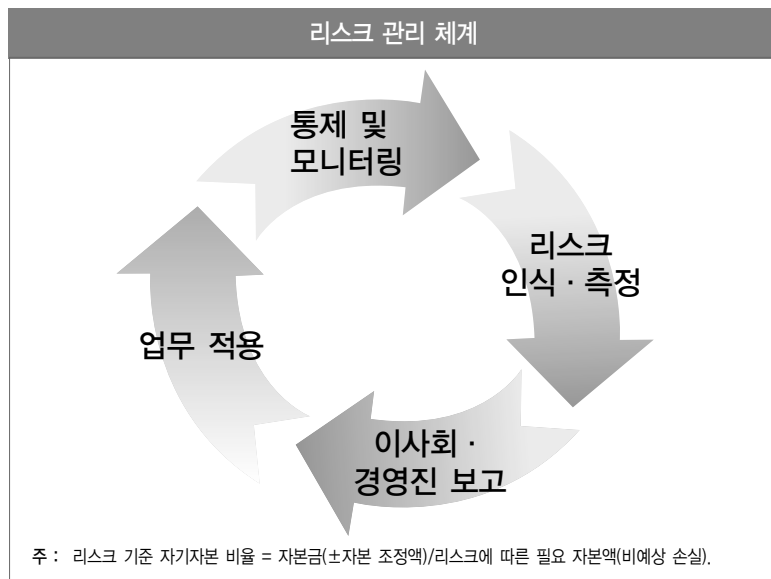
셋째, 리스크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조직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공제조합은 리스크 관리 업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전담 조직인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임명토록 하여 리스크 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넷째, 공제조합 비상 위험 준비금의 적립 방법 변경이다. 이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은 아니나 공제조합 보증 수수료는 일정한 반면 보증 대급금 수준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연도별 손익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즉, 순이익 발생시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보증 대급금이 급증할 경우 이를 환입토록 함으로써 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감독 규정에 의한 관리 감독을 조합에 적용한다는 의미는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금융기관의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조합 경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특히, 조합의 리스크는 주요 사업이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조합원에 대한 보증 및 용자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하락시 손실 규모가 크게 되는 특성이 있다.

조합 대급 위험의 변동성을 추정하



기 위하여 상장 건설사와 종합주가지수 간 주가지수 민감도인 베타계수를 보면 1.356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를 은행의 베타계수 0.909와 비교해도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본 적정성 및 건전성 판단시 건설공제조합은 은행보다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급증으로 적정 자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증 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맺는말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수년간 건설업체의 대량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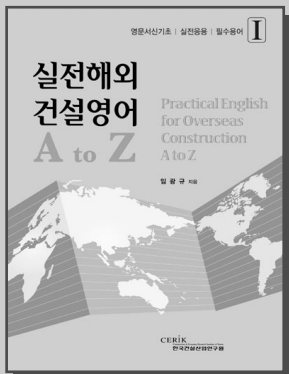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충분한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근래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로 인하여 조합의 보증 대급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건설업 구조조정 국면과 중견 업체 부도설 등 다수의 악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보증시장 경쟁 심화 등은 조합의 영업 환경에서 다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본질은 리스크 인수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다. 리스크를 측정하여 위험 선호도에 따라 저(低)리스크-저수익 또는 고(高)리스크-고수익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이나 개인은 고리스크-고수익을 선택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나 국내 은행의 부동산 PF로 부실화 등 과도한 리스크 선호로 인한 실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은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히 리스크-수익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는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